

학생현장실습규정 전부 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- 현장실습(학기제)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- 기존 규정에서 각 조 와 각 호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학기제 현장실습 시 1년(4학년 이상) 운영으로 제한(안 제3조 및 제6조)
- 현장실습 시기와 학점인정시기 일치 규정화(안 제3조 3항)
- 현장실습 이수가능 학점을 최대 36학점에서 최대 30학점으로 축소(안 제4조)
- 현장실습 관련 업무분장(안 제5조)
- 현장실습 제외 및 운영(안 제7조)
- 현장실습 지원비의 범위 및 지급방법 명시(안 제10조)

3. 규정 개정안: “붙임”